

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3-429호
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재공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-260호(2002.07.0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7호(2006.10.26.)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(강북4구역)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60호(2015.06.11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,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강북구 미아동 45-32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계획(강북3 존차장비구역→강북3 촉진구역)을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되어, 조건부 이행사항이 반영된 최종적인 재정비촉진계획(안)을 다음과 같이 재공람 실시하오니,
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강북구청 도시계획과로 소정의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3월 21일
강 북 구 청 장

1. 공람기간 : 2023.03.24. ~ 2023.04.07.(14일)
2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(수유동), 강북구청 도시계획과
3. 공람내용 :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

I.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

①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: 변경 없음

명 칭	유 형	위 치	면 적(m ²)	지정목적
마야중심 재정비 촉진지구	중심지 형	강북구 마야동 70알대 성북구 하월곡동 88알대	478,515m ²	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·유통업 무·정보통신 등의 도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,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,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 로 발전시키고자 함

2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: 변경 없음

3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: 변경 없음

4.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차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: 변경

1) 촉진구역 : 변경

구분	재정비촉진사업명칭	위치	면 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강북3 재정비촉진구역	강북구 마야동 45-32알대	-	증) 24,348.0	24,348.0	

2) 촉진계획 : 변경

(1)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가) 마야중심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구분		면 적(m ²)			비율 (%)	비고
		기정	증감	변경		
합계		478,515	-	478,515	100.00	
소계		253,750	증) 2,555.4	256,305.4	53.50	
복합 용지	소계	198,137	증) 2,555.4	200,692.4	41.88	
	상업·주거	147,229	증) 2,555.4	149,784.4	30.77	
	업무·주거	7,201	-	7,201	1.98	
	상업·업무	20,982	-	20,982	4.38	
	상업·문화	22,725	-	22,725	4.75	
상업 및 업무용지	소계	53,995	-	53,995	11.28	
	일반상업	30,520	-	30,520	6.38	
	근린생활시설	2,914	-	2,914	0.61	
	업무	20,561	-	20,561	4.30	
기타	소계	1,618	-	1,618	0.34	
	종교	1,618	-	1,618	0.34	
소계		224,765	감) 2,555.4	222,209.6	46.50	
기반시설	공원	12,508	감) 1,651.0	10,857	2.27	
	공공공지	-	-	-	-	

	공공청사	754	-	754	0.16	
	전기공급설비	558	-	558	0.12	
	도시철도	(6,043)	-	(6,043)	-	
	주차장	(3,975)	-	(3,975)	-	신월곡1구역 공원 (하월곡동 104-88)과 중복결정
	도로	210,300	감) 904.4	209,395.6	43.82	

(2) 인구·주택수용 계획 : 변경

가) 강북3구역 주택공급계획 : 변경

	총세대수		
구분	합계	분양	임대
신설	922	692	230

(3) 기반시설 설치계획 : 변경

가) 촉진지구 기반시설계획 : 변경

구분		면 적(㎡)			비율(%)	비고
		기정	증감	변경		
교통 시설	도로	210,299.7	감) 904.4	209,395.3	43.82	
	도시철도	(6,043.4)	-	(6,043.4)	-	중복결정
	소계	210,299.7	감) 904.4	209,395.3	43.82	
공간 시설	공원	12,043.3	감) 1,651.0	10,392.3	2.52	
	공공공지	754.0	-	754.0	0.16	
	전기공급설비	2,263.0	-	2,263.0	0.47	
	소계	15,060.3		15,060.3	3.15	
건축물 기부 채납 (연면적)	문화시설	10,052.1	-	10,052.1	2.10	
합계		223,097.0	감) 2,555.4	220,541.6	46.49	
기반시설 이외 토지이용		255,418.0	증) 2,555.4	257,973.4	53.51	
총계		478,515.0	-	478,515.0	100.00	

나) 구역별 기반시설계획 : 변경

구역명	구분	내용	비고
가정	신길읍 재정비촉진구역	- 마자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- 공공공지 및 공원 조성	변경없음
가정	신길읍1 재정비촉진구역	- 마자로 이면도로 확폭정비	변경없음
가정	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	- 종암로 이면도로 개설 - 남측 공원 조성	변경없음
가정	신월곡2 재정비촉진구역	- 북측과 남측 공원 조성	변경없음
가정	강북2 재정비촉진구역	- 도봉로 이면 P면도로 개설 및 완화차로 확폭정비 - 소공원 조성 및 문화시설(공연장) 설치	변경없음
가정	강북3 존차정비구역	- 이면도로 개설 등 정비, 공공공지 설치 등	촉진구역 변경 에 따른 기본시 설계획 변경
변경	강북3 재정비촉진구역	- 이면도로(월계로3길) 개설 및 임대주택 제공 등	
가정	강북5 재정비촉진구역	-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정비 - 소공원 정비	변경없음
가정	강북6 재정비촉진구역	- 북측 소공원 조성	변경없음
가정	강북7 재정비촉진구역	- 도봉로 이면도로 개설	변경없음
가정	존차관리구역	-	마아삼거리 지구단위계획으 로 관리

(4) 공원녹지계획 : 변경 없음

(5) 교통계획 : 변경 없음

(6) 경관계획 : 변경 없음

(7) 재정비촉진구역 자장에 관한 계획 : 변경

가) 구역별 계획 : 변경

구분	구역명	면 적(㎡)			사업 방식	비고	
		가정	증감	변경			
총계		478,515	-	478,515	-		
미 아 중 심	소계		155,331.1	증) 23,918.6	179,249.7	-	9개구역
	촉진 구역	강북2재정비촉진구역	18,958	감) 430.3	18,527.7	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	
		강북3재정비촉진구역	-	증) 24,348.9	24,348.9		신규자정
		강북5재정비촉진구역	12,870	-	12,870		
		강북6재정비촉진구역	2,574.1	-	2,574.1		
		강북7재정비촉진구역	11,526	-	11,526		
		산길음재정비촉진구역	28,215	-	28,215		
		산길음1재정비촉진구역	8,390	-	8,390		
		산월곡1재정비촉진구역	55,112	-	55,112		
		산월곡2재정비촉진구역	17,686	-	17,686		준공
	소계		23,995	감) 23,995	-	-	-
	존치 정비 구역	존차정비구역	23,995	감) 23,995	-	-	촉진구역 신규자정
		소계		299,188.9	증) 76.4	299,265.3	-
	존치 관리 구역	존차관리구역	299,188.9	증) 76.4	299,265.3	-	-

(8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: 변경없음

(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: 변경

가) 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: 변경

구 분		구역명	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(%)				최고높이 (m)	주요 용도
					기준	허용	상한	법적 상한		
촉진 구역	신 설	강북3구역	24,348.9	60% 이하	300 이하	397 이하	467 이하	500 이하	130m 이하	주거

1)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) 제1항 3호에 따라 촉진계획
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%를 임대주택으로 추가 확보시 완화 적용

- (10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: 변경
 가)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계획 : 변경없음
 나) 구역별 기반시설부담 계획 : 변경

구분	구역명	내용	비고
기정	강북2 재정비촉진구역	- 도봉로 이면도로 개설 및 원화차로 확폭 정비 - 소공원 조성 및 문화시설(공연장) 설치 -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14.2%이상	변경없음
기정	강북5 재정비촉진구역	- 도봉로 이면도로 확폭 정비 - 소공원 정비 -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18.66%이상	변경없음
기정	강북6 재정비촉진구역	- 북측 소공원 조성 -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15%이상	변경없음
기정	강북7 재정비촉진구역	- 도봉로 이면도로 개설 -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24.9%이상	변경없음
기정	신길읍 재정비촉진구역	- 마아로 이면도로 확폭 정비 - 공공공지 및 공원 조성 -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15.9%이상	변경없음
기정	신길읍1 재정비촉진구역	- 마아로 이면도로 확폭 정비 -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20.7%이상	변경없음
기정	신월곡1 재정비촉진구역	- 종암로 이면도로 개설 - 남측 공원 조성 -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17.0%이상	변경없음
기정	신월곡2 재정비촉진구역	- 북측과 남측 공원 조성 -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16.6%이상	변경없음
기정	강북3 존치정비구역	- 이면도로 개설 등 정비, 공공공지 설치 등 -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12.8%이상	감소된 도로/ 공원 대신 임 대주택 제공으 로 공공용지 면적 대체
변경	강북3 재정비촉진구역	- 이면도로(월계로3길) 개설 및 임대주택 제공 등 -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12.8%이상	
기정	존치관리구역	-	마아로관리 지구단위계획 으로 관리

- (11)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: 변경없음
 (12)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기간 동안의 범죄예방대책 : 변경없음
 (13)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 (14) 상하의 분포 및 수용계획 : 변경없음
 (15)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: 변경

가)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: 신설

(가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신설

구분	재정비촉진사업명칭	위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강북3 재정비촉진구역	강북구 마야동 45-32일대	-	증) 24,348.9	24,348.9	

(나)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

추정 비례율	- 추정비례율산정방식 : (총 수입 - 총 지출) / 종전자산 총액 × 100% - 추정비례율: 100.56% - 총 수입 추정 : 8,745억 - 총 지출 추정 : 6,631억 - 종전자산총액 추정 : 2,371억														
개별 종전자산 추정액	- 개별 공사가격 : 부동산공사가격알리미에서 개별 공사가격 확인 - 공동주택 소유자 = 공동주택 공사가격 × 보정률(2.21) - 단독주택, 상가 소유자 = 토지가액 + 건물가액 ※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가격에 토지평가액포함 - 토지 = 개별공사가가 × 토지면적 × 보정률(3.09) - 건물 = 개략단가(약 100만원 / 3.3㎡) × 연면적 ※ 건물의 개략단가는 경과연수 21~35년 기준 평균 약 100만원/평 추정														
추정 분담금 산출	추정분담금 산정방식 = 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(종전자산 추정액 × 추정비례율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관리자 분양가 추정액(a)</th><th>추정 관리가액(b)</th><th>추정분담금(a-b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전용39㎡형</td><td>5.05억</td><td rowspan="3">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× 추정비례율(100.56%)</td><td rowspan="3">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- 추정 관리가액 (+: 부담 / -: 환급)</td></tr> <tr> <td>전용59㎡형</td><td>7.57억</td></tr> <tr> <td>전용84㎡형</td><td>9.74억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	관리자 분양가 추정액(a)		추정 관리가액(b)	추정분담금(a-b)	전용39㎡형	5.05억	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× 추정비례율(100.56%)	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- 추정 관리가액 (+: 부담 / -: 환급)	전용59㎡형	7.57억	전용84㎡형	9.74억
관리자 분양가 추정액(a)		추정 관리가액(b)	추정분담금(a-b)												
전용39㎡형	5.05억	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× 추정비례율(100.56%)	관리자 분양가 추정액 - 추정 관리가액 (+: 부담 / -: 환급)												
전용59㎡형	7.57억														
전용84㎡형	9.74억														

(다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: 신설

구분	명칭	면 적(㎡)			비 율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-	증) 24,348.9	24,348.9	100.0	-
정비기간 시설 등	소계	-	증) 3,108.6	3,108.6	12.8	-
	도로	-	증) 3,108.6	3,108.6	12.8	-
합치		-	증) 21,240.3	21,240.3	87.2	-

(라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: 신설

①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가정	중로	2	1	15	보조간선도로	853	마아동 860-127	마아동 860-48	일반도로	-	-
변경	중로	2	1	15~20	보조간선도로	853	마아동 860-127	마아동 860-48	일반도로	-	-
신설	중로	3		12	집산도로	155	마아동 39-26	마아동 860-241	일반도로	-	-

②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폐지	①	주차장	마아동 860-39	89	감) 89	-	-
폐지	②	주차장	마아동 860-18알대	205	감) 205	-	-

(마) 기반시설 설치계획(신설) : 신설

구분	구역명	내용	비고
신설	강북3 재정비촉진구역	• 이면도로(월계로3길) 개설 및 임대주택 제공 등 •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12.8%이상	

(바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: 신설

①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 계획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 이후	
신설	강북3 재정비촉진구역	24,348.9	마아동 45-32알대	138	-	-	138	-	

②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지하/지상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신설	강북3 재정비 촉진구역	24,348.9	택지	21,240.3	마야동 45-32 알대	주거	60 이하	기준:300이하 허용:397이하 상한:467이하 법적상한:500이하	130 이하 (5/37)	주거 95%미만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구분		전체 세대수	일반 분양	임대			
							소계	의무 공공임대	기부채납 공공임대	증가용적률 50% 소형임대
			합계		922	692	230	132	59	39
			60 ㎡이 하	39㎡	54	7	47	47	-	-
				59㎡	293	171	122	85	-	37
			84㎡		575	514	61	-	59	2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가정	• 건축한계선 : 월계로 3m, 동측 하천갈변 3m, 서측 도로변 3m, 내부 도로변 3m						
			변경	• 건축한계선 : 월계로 3m, 월계로3길 3m, 도봉로8길 3m, 서측 주거지 연접부 3m						
지정용도			•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							
허용용도			• 불허용도 외 용도							
불허용도			• 용도지역지구에 불허하는 용도 •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• 공장 • 창고시설 •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•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은 제외한다) •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							
기타사항			• 공공보행통로 : 폭원 6m • 공개공지 : 월계로변 1개소, 도봉로8길변 1개소 • 전면공지 : 보도형전면공지 1개소, 차도형전면공지 1개소							
차량출입불허구간			• 도봉로8길 차량진출입구 외 구간 • 월계로3길 차량진출입구 외 구간							

(사) 정비사업 시행계획 : 신설

구분	시행방법	시행 예정시기	사업시행 예정자	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	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	공공용지 부담비율
신설	관리처분계획	-	신탁	922세대	해당사업없음	순부담율 12.8%이상

(아) 가구 및 확지에 관한 결정 조서 : 신설

구분	명칭	면적(㎡)			비율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확지	소계	-	증) 21,240.3	21,240.3	100.0	-
	택지 1	-	증) 21,240.3	21,240.3	100.0	-

(자)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: 신설

구분	건립 위치	부지면적(㎡)	동수	연면적(㎡)	세대수(세대)	세대규모 (전용, ㎡)	비고
신설	강북3 재정비 촉진구역	21,240.3	-	35,415.92	230	39.98 : 47세대	공공임대 포함
						59.92 : 122세대	
						84.94 : 61세대	

(차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: 신설

시설 구분	시설의 종류	법정기준		계획면적	비고
		기준근거	면적(㎡)		
공동 이용 시설	관리사무소	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8조, - 10㎡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㎡를 더한 면적	57.5	84.9	-
	경로당	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제8조의 4 - 500~1,000세대 미만인 경우, 225㎡ 이상	225.0	265.6	-
	어린이놀이터	「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」 - 300~1,000세대 미만인 경우, 200㎡에 세대당 1㎡를 더한 면적	1,194.0	1,200.0	-
	어린이집	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제8조의 4 - 500~1,000세대 미만인 경우, 330㎡ 이상	330.0	390.4	-
	주민운동시설	-	-	480.4	-
	작은도서관	「서울특별시 주택조례」제8조의 4 - 500~1,000세대 미만인 경우, 158㎡ 이상	158.0	260.2	-
	커뮤니티센터 (살내놀이터)	-	-	1,248.9 (332.5)	-
	다함께돌봄센터	- 500세대 이상 인 경우, 전용면적 66.0㎡ 이상	66.0	150.0	-

1) 다함께돌봄센터 및 살내놀이터는 아동 안전 및 채광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지상부 설치

(카) 기타사항에 대한 계획 : 신설

구 분	결 정 내 용		비 고
	기정	변경	
전면공지	보행공간 및 차량 진출입차선 조성	• 보도형전면공지 1개소 • 차도형전면공지 1개소	막다른 도로 폭원 확보(6m)
공개공지	월계로변1개소 (면적합계 500㎡이상)	• 도봉로8길변 1개소 • 월계로변 1개소	-
공공보행통로	-	• 1개소(6m)	-
차량진출입불허구간	-	• 도봉로8길 차량진출입구 외 구간 • 월계로3길 차량진출입구 외 구간	-

(16)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: 변경

가) 강북3 존치정비구역 : 변경

(가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변경

구분	재정비촉진사업명칭	위치	면 적(㎡)	비고
기정	강북3 존치정비구역	강북구 마야동 45-32알대	23,995.0	-
변경	구역 해제			

(나) 건폐율·용적률·건축물의 높이 계획 : 변경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지하/지상)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기정	강북3 존치정비구역	23,995.0	택지	18,615.0	마야동 45-32알대	판매, 업무,주거	60 이하	기준:300이하 허용:400이하	100 이하	주거 70% 미만
변경	구역 해제									

(다) 정비기본시설 계획 : 변경

구분	구역명	내용	비고
기정	강북3 존치정비구역	• 이면도로 개설 등 정비, 공공공지 설치 등 • 공공용지 확보 비율 : 순부담율 12.8%이상	
변경	구역 해제		

(17)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 : 변경없음

②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

1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

1)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: 변경

(1) 도로

○ 도로 총괄표

류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계	6	2,761	57,250	4	991	26,977	4	1,256	23,139	3	514	7,134
대로	2	726	24,466	1	542	19,970	-	-	-	1	184	4,496
중로	4	1,860	33,562	3	378	7,785	4	1,256	23,139	2	226	2,638
소로	-	-	-	-	-	-	-	-	-	-	-	-

○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가정	중로	2	1	15	보조간선도로	853	마아동 860-127	마아동 860-48	일반도로	-	-
변경	중로	2	1	15~20	보조간선도로	853	마아동 860-127	마아동 860-48	일반도로	-	-
신설	중로	3		12	집산도로	155	마아동 39-26	마아동 860-241	일반도로	-	-

(2) 주차장

○ 주차장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 후	
폐지	①	주차장	마아동 860-39	89	감89	-	-
폐지	②	주차장	마아동 860-18알대	205	감205	-	-

(3) 철도 : 변경없음

(4) 광장 : 변경없음

(5) 공공공지 : 변경없음

(6) 전기공급시설 : 변경없음

2. 존치관리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4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은 주민공람, 구의회 의견청취, 공청회, 관계 행정기관(부서) 협의, 서울시 도
사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사에서 결정·고시되므로 제반절차 이행과정에서 일부
계획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5. 관련서류 : 강북구청 도시계획과에 공람도서 비치

- 공람시간 : 평일 09:00~18:00

6. 의견제출 : 공람기간 내 강북구청 도시계획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

- 공람의견서 서식 : 첨부 양식 참조

- 우편주소 : (우 01071)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(수유동, 강북구청) 도시계획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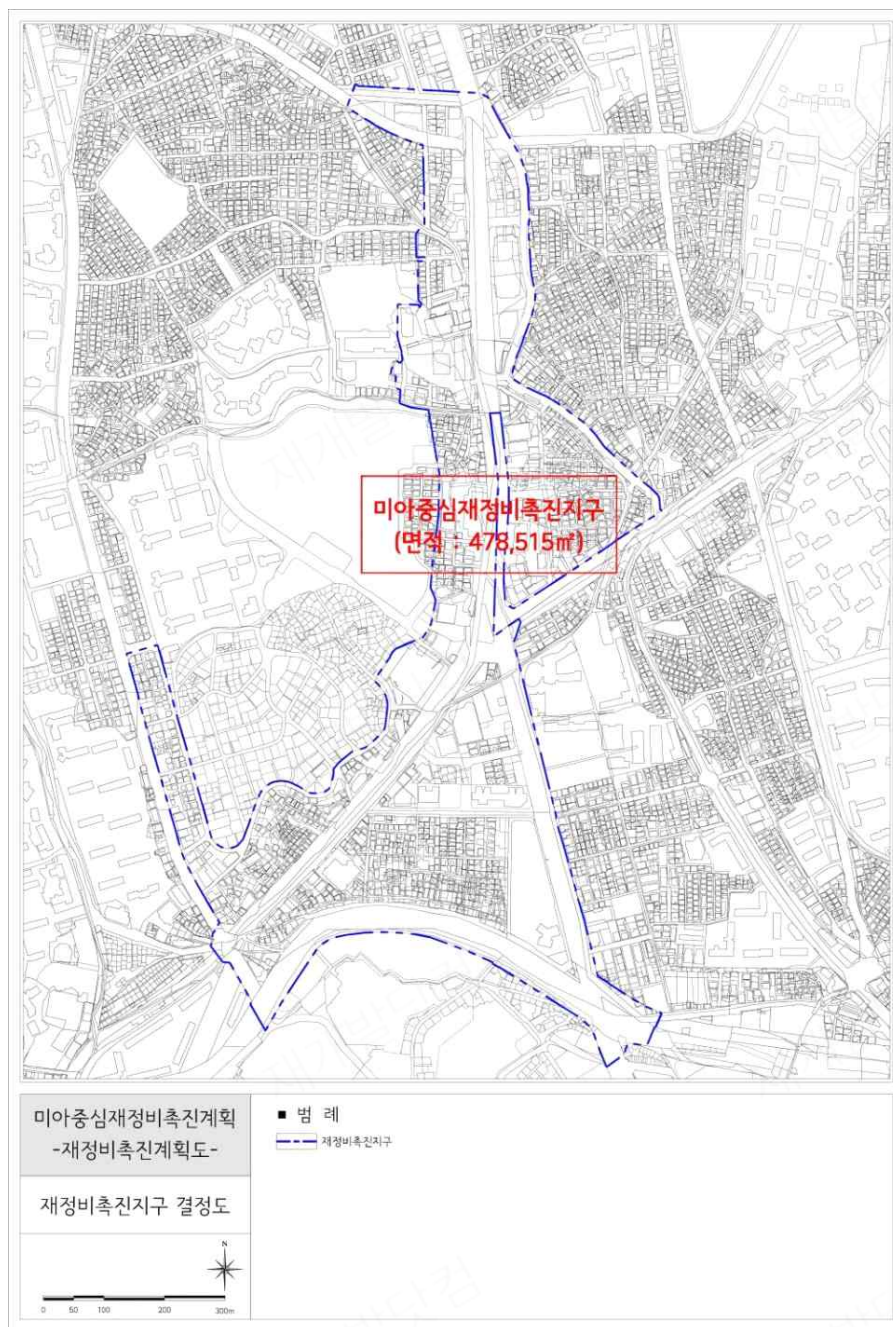
※ 우편에 의한 공람의견서는 2023.04.07. 도착분까지 의견서로 반영합니다.

7. 문 의 처 :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☎ 02-901-685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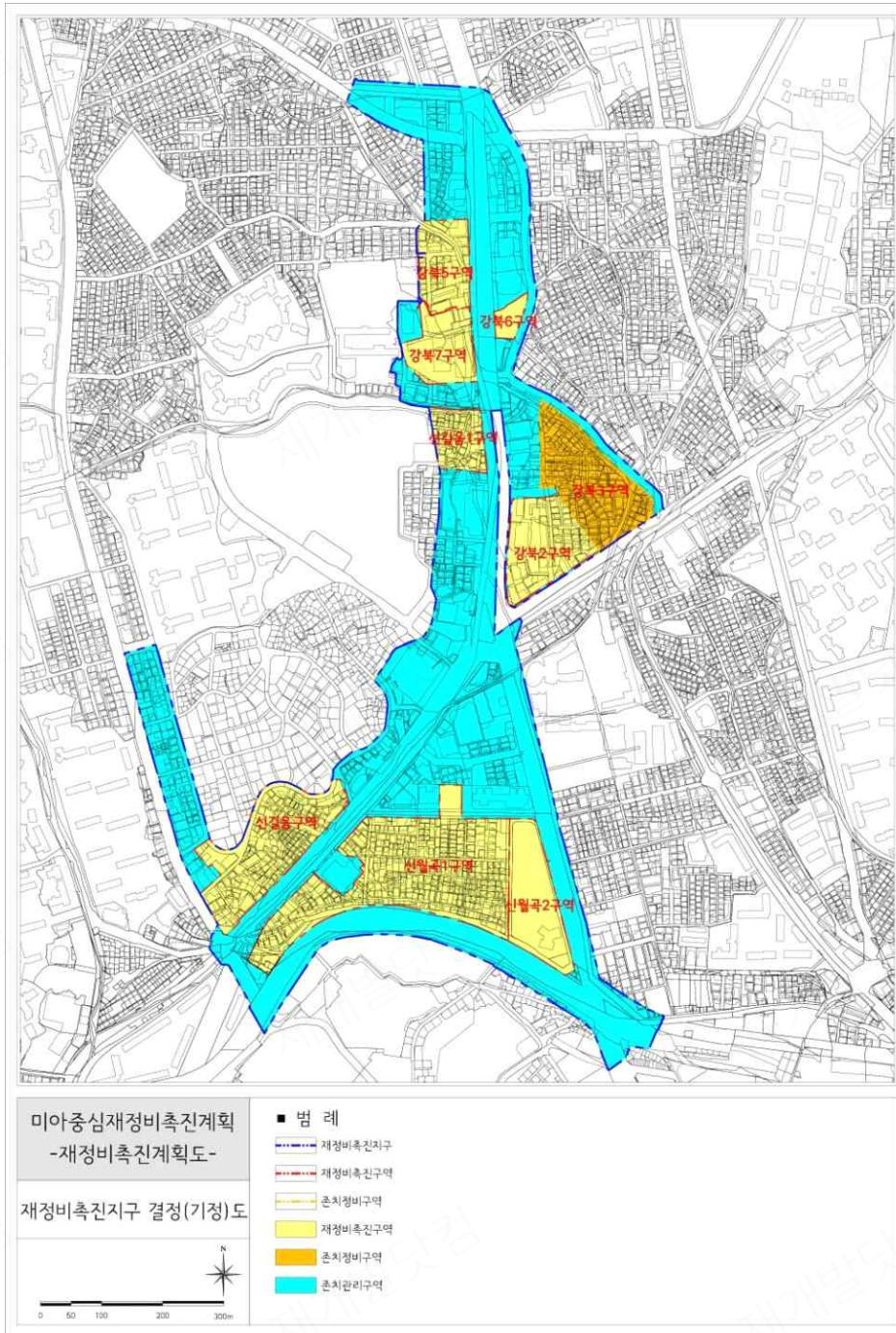
첨부 : 1. 관계도면 1부.

2. 공람의견서(양식) 1부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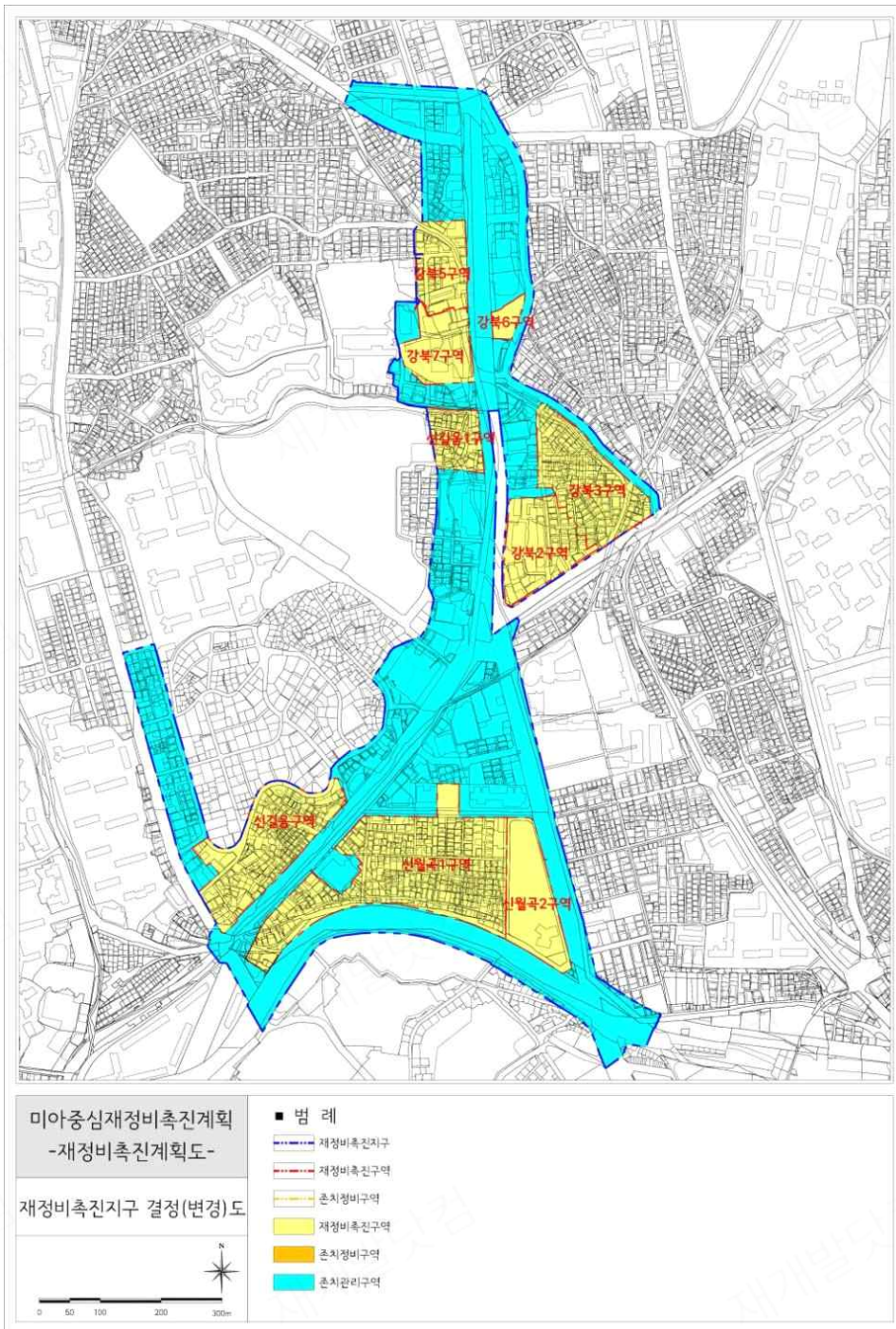
○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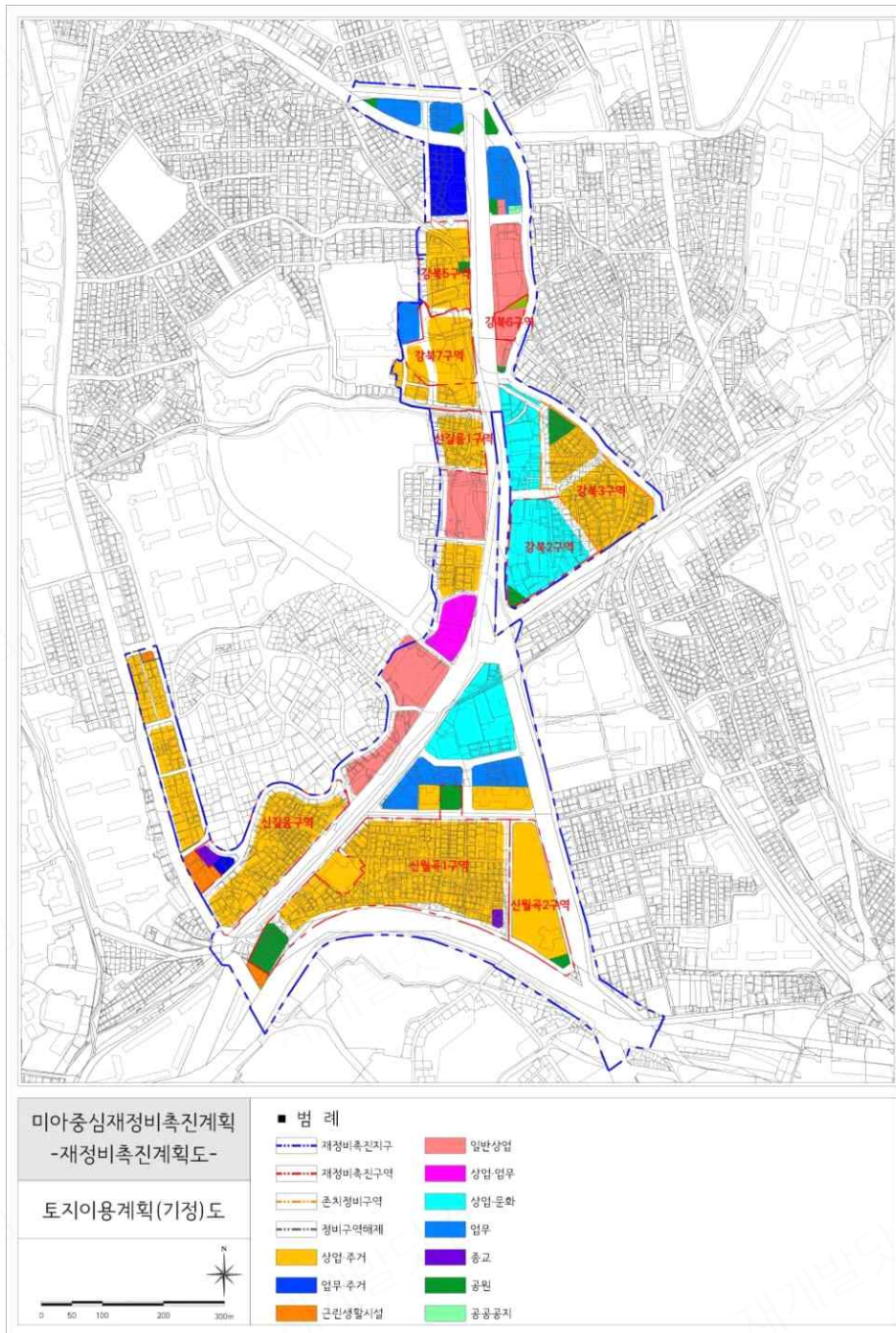
○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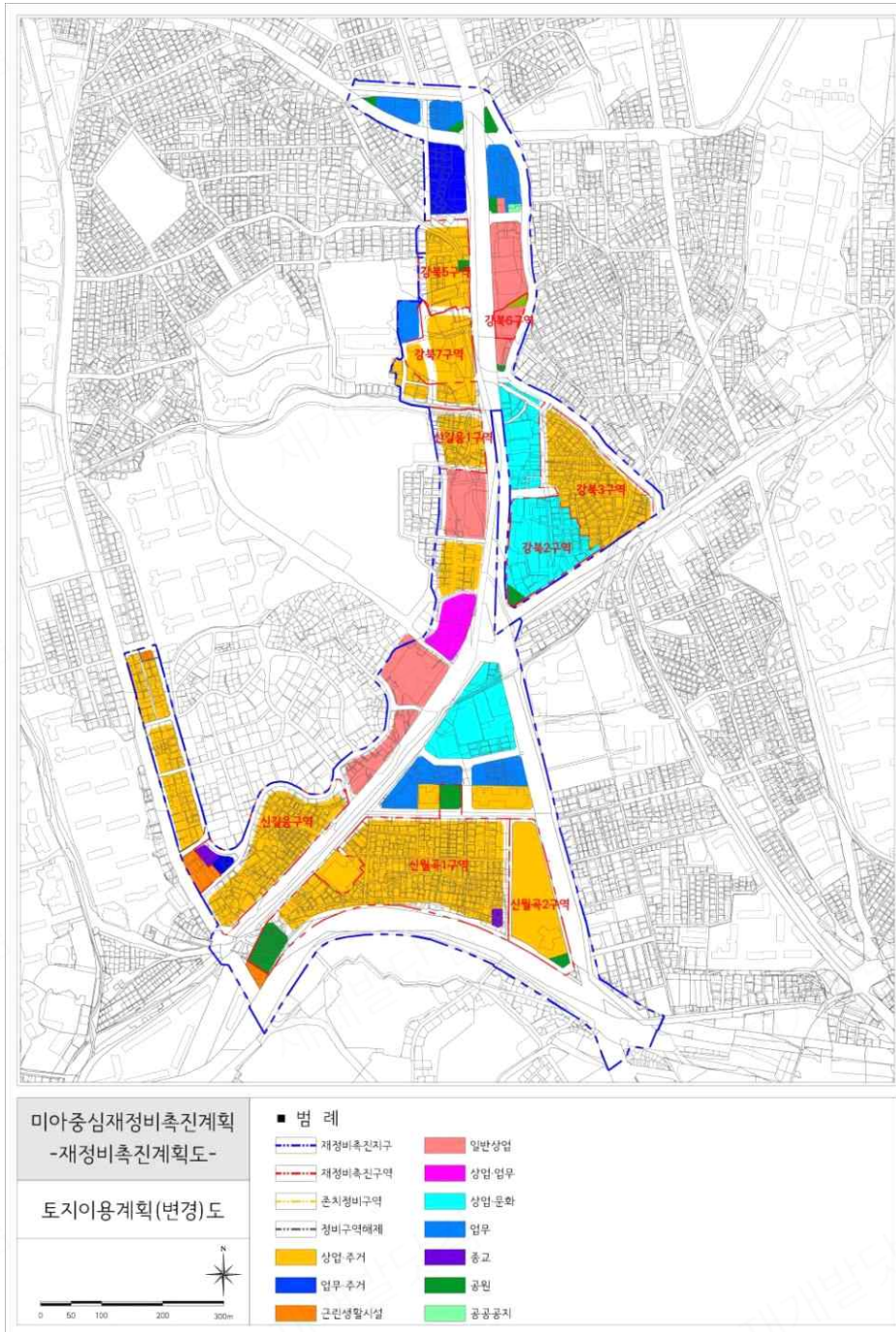
○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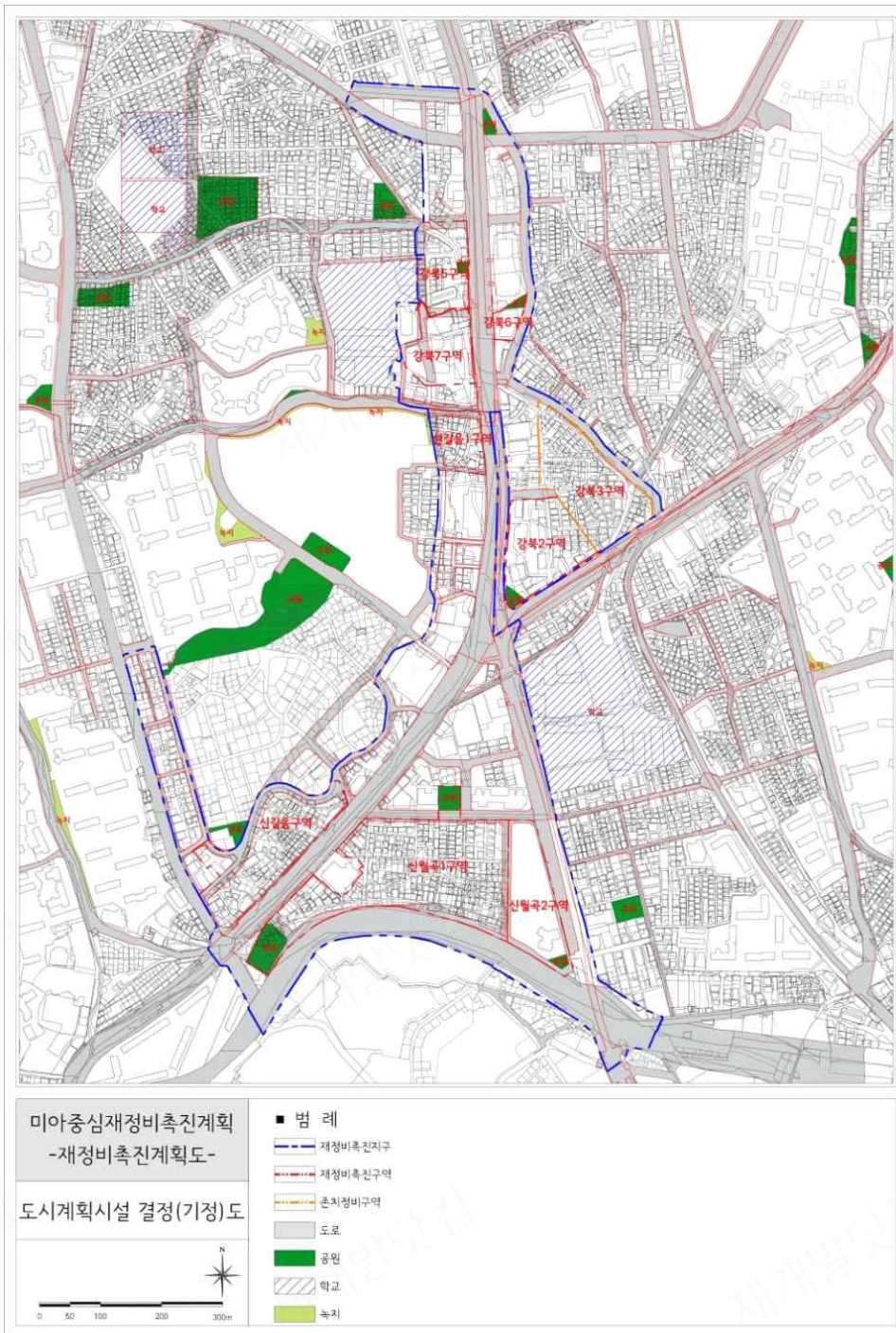
○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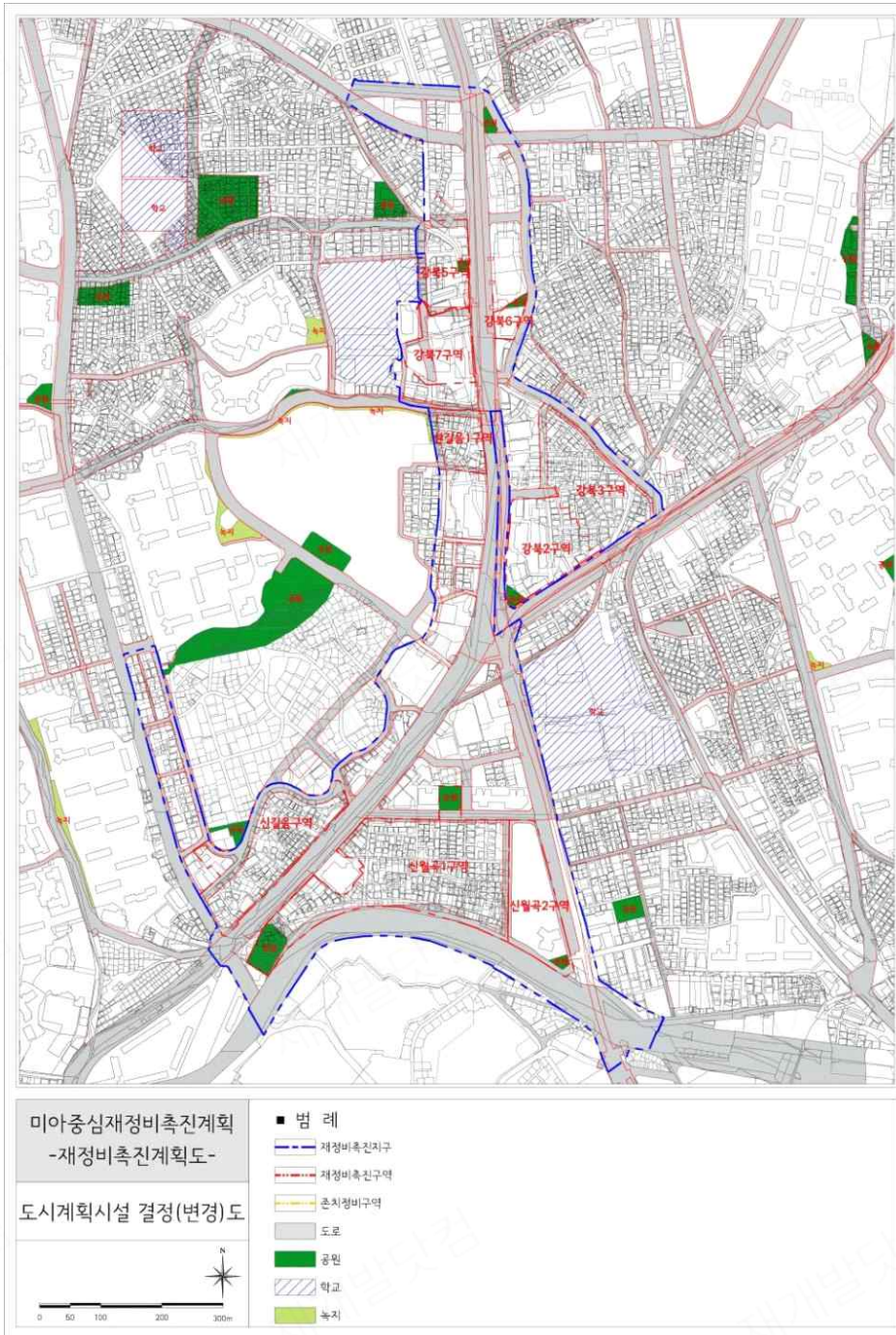
○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(변경)도



○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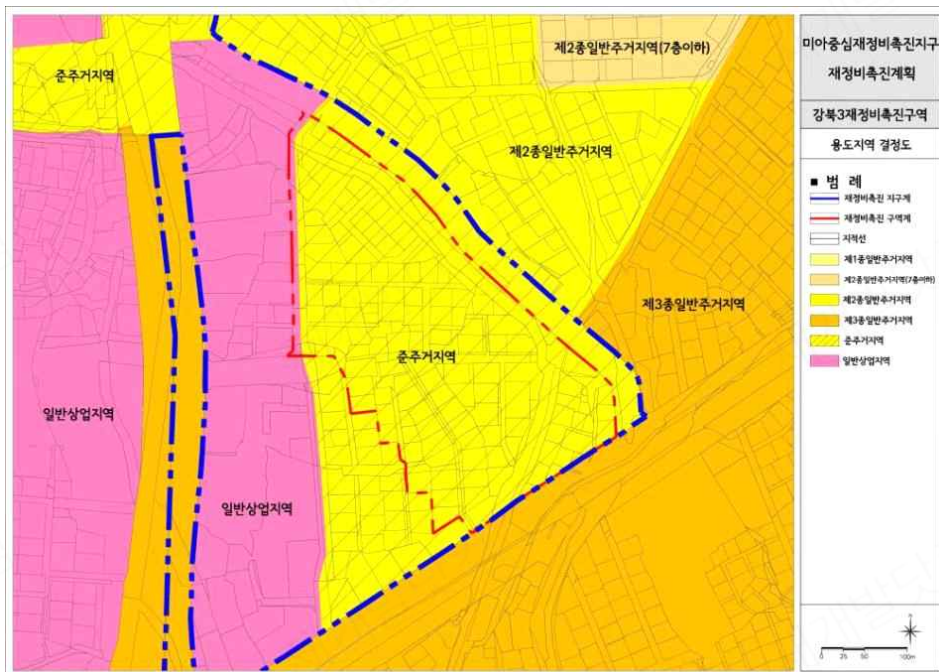
○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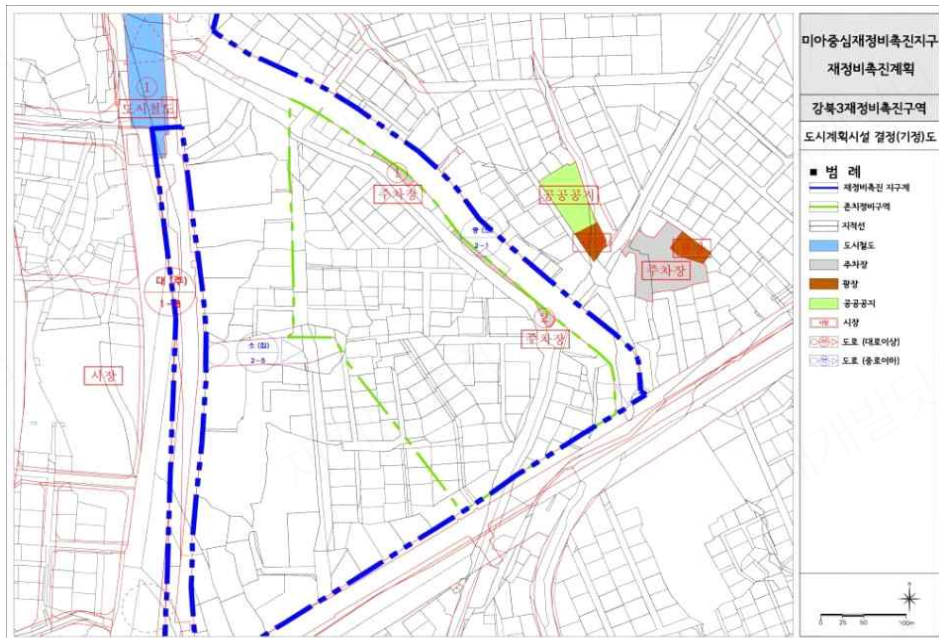
○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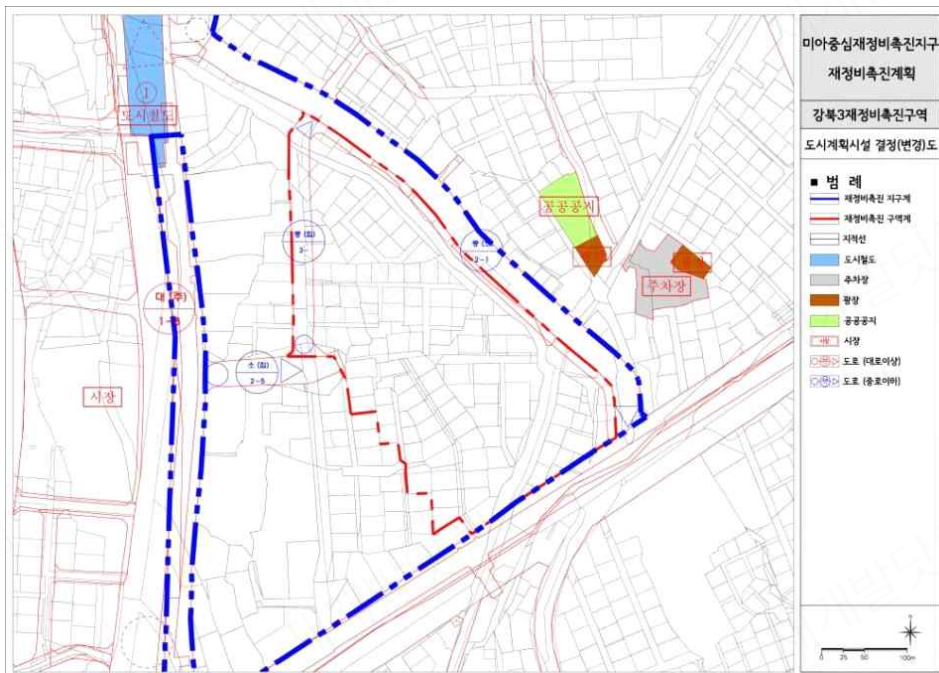
○ 용도지역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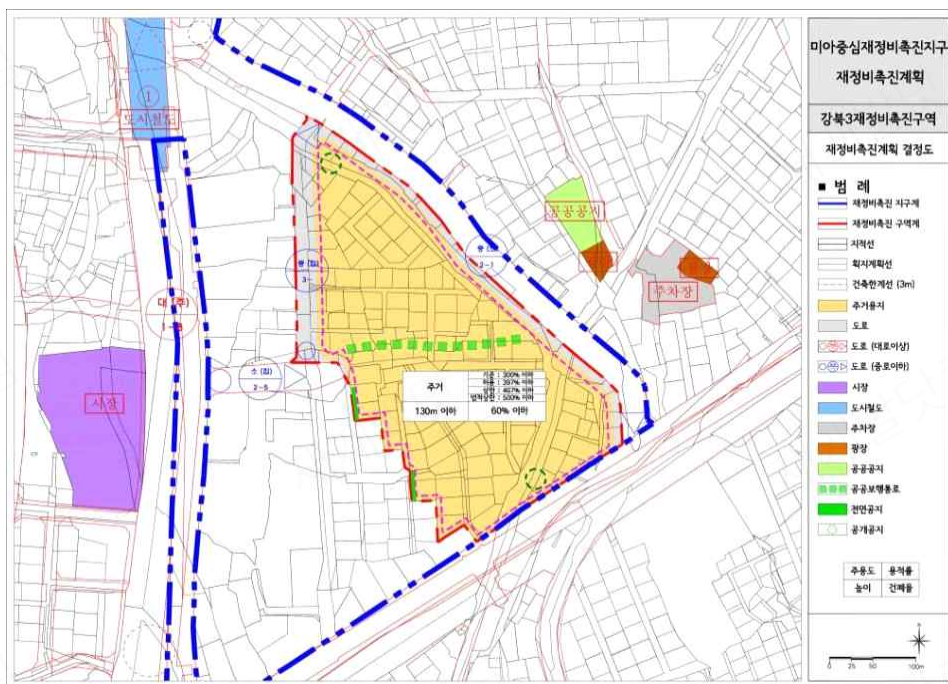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



○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

○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



기 타

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(휴·복직)

[발령 제66호]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소속	직급
1	박지현	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복직을 명함【복직일:2023.3.25.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규정에 따라 휴직(가족돌봄)을 명함【기간:2023.3.25.~2024.3.24.】	부동산정보과	지방행정주사보
1	이여진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휴직(질병)을 명함【기간:2023.4.1.~2024.3.31.】	환경과	지방행정서기

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시보하제 및 정규임용

[발령 제68호]

시행일자: 2023. 3. 26.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소속	직급
1	김예지	지방보건서기보에 임함	의약과	지방보건서기보시보

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사발령(의원면직)

[발령 제70호]

시행일자: 2023. 3. 20.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소속	직급
1	윤미영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	지역보건과	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